

<6조 수정안>2006.7.10. 김효진안- 재생산권

□ 배경

- 한국안 6조가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권리의 주체로서의 장애여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음. 의장안 아동조항 7조의 경우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동 당사자”인 것과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문제의 핵심이 잘 드러남.
- 따라서 6조가 단독조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보임. 메인스트리밍이 더 효과적으로 인지될 가능성 많음.
- 그러나 6조 단속조항이 빠지고 나면 현재 의장안이 부분 수정된다 해도 장애여성의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6조에 ‘재생산권과 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1) 참여

- 참여는 장애여성이 피해자,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핵심 주제이므로 권리조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의장안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가 있으나 각 조항 모두를 ‘장애인과 장애여성’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에 다가가기 힘들 것으로 보임.
- 한국안 2항 “the equality on the basis with others”가 추상적이므로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삶에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카이로 세계인구회의 행동강령 제2장 원칙 참조)
- 단, 장애여성 자조조직의 역량강화 지원 항목은 29조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음.

2) 재생산권

- 제23조 : 재생산 문제는 가족 문제로 보기 어려우며, 성, 임신, 출산, 건강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임. 또 강제불임, 낙태, 불임약물복용 등 의료적인 행위로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의료적인 접근은 건강 조항에서 소화해야 함.
- 모성보호만으로 한정한다면 장애여성 전체를 포괄하기 어려움. 따라서 성적 권리(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명시되어야 함. 이는 무성적으로 취급되는 장애여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문제에 다가가는 데 필수적임. 또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지 않으면 선언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특히 각국 정부는 임신, 출산, 성생활 등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장애여성이 차별, 강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을 지원해야 한다.”

\* 재생산권이란?

- 1974년 유엔 세계인구의 해 : 모든 커플과 개인들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회의 : 모든 커플과 개인들이 그들의 자녀의 수와 터울, 시기를 자유롭게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 카이로 행동강령과 북경행동강령 : 임신·출산·성생활 등 인간의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개인과 커플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관련 정보·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참조 :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protect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rohibition of forced sterilization,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ies and programs in field such as family-planning and parenthood,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period that fully reflect the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한국안 Art 23e bis).